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김원중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김원중 의원 외 28명

나. 의안번호 : 제3448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성흠제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3492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II. 제안사유

1. 김원중 의원 대표발의안

- 자전거 이용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에 포괄적인 표현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자전거이용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서 기존의 “음주상태”에 대한 내용에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추가하여 약물의 위험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 확보 의무를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자전거 안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기준을 삭제하며 “강구”, “의거하여” 등 관행적 행정용어를 “마련”, “따라”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최근 자전거 이용이 생활 교통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 질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 주차 수요 증가에 비해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등에 대한 정비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설치 수준과 관리 기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적인 이용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지침 마련의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김원중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정의는”을 “뜻은”으로 수정하여 용어 정의의 정확성을 높임(안 제2조).
- 나. 정의된 용어를 조례 내에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 다. 조 제목을 간결하게 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목).
- 라.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뿐 아니라 약물 영향도 포함하도록 문구를 보완함(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 마. 기존의 포괄적 표현을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

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바. 여러 항이 나열되지 않는 조문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함(안 제3조의2).

사. 유효기간이 지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의3제2항제7호 및 제3항)

아. “강구”를 “마련”으로, “의거하여”를 “따라”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변경함(안 제12조의2, 제15조, 제18조).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4호 신설)

IV. 참고사항

1. 김원중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2. 20. ~ 2.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¹⁾

- 상위법령(도로교통법)에 맞춰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확보 의무 및 약물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등 개정안에 동의함
- 또한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종료('21.12월)로 해당조항 개정 필요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에 동의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보행자전거과-2524, 2026.02.19.)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2.20. ~ 2026. 2.24.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²⁾
 -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 책무를 명시하여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
 -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우리 시에서 수립하여 운용 중인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이미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침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2) 보행자전거과-252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26.2.19.)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김원중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에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상태 외에 약물 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용어 순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약물의 영향 하의 자전거 운행 금지(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 안 제3조제4항과 안 제4조제5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홍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약물 영향 하에서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각각 규정하는 것임
-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³⁾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

- '26년 1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약·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24년 70건, '25년 7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경찰청 자체적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⁴⁾
-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구조적 측면에서 보호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약물 등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 우려가 큼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약물 운전 관련 사항 등을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홍보 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약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보여짐

3)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경찰청 보도자료, 2026.1.15.)

- 도로교통법 개정(25.4.1.) 및 시행(26.4.2.)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2025년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 총 237건

전년 대비 45.4%(163→237건, 74건↑) 증가

- 2025년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총 75건

마약 운전 72.2%(18→31건, 13건↑) 증가, 약물 운전 15.4%(52→44건, 8건↓) 감소

■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 관련(안 제4조제4항)

- 안 제4조제4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5)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6)에는 관련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자전거 이용자 수 증가 등으로 서울 자전거 교통사고7)가 매년 빈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

5)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③~④ 생략)

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③ 생략)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7)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건)

	5년 평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1,921	1,802	1,779	2,824	1,531	1,670
사망자수	2,112	2,018	1,969	3,031	1,698	1,845
부상자수	12	14	13	14	6	11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요금 감면 삭제 관련(안 제12조의3제2항제7호 및 제3항 단서 삭제)**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 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음
- 다만, 조례 개정 시 동 규정의 효력 기간을 '21년 12월까지로 정함에 따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⁸⁾되었는 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보여짐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 <제7326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생활 교통수단으로 확산됨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9)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지정·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2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내 자전거도로는 총 1380.9km (1,516개소)에 이르고 있음.

※참고1: 자전거도로 설치현황('26.1월 기준)

	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연장(km)	1380.9	200.0	73.3	189.8	569.3	348.5
노선(개)	1,516	286	106	175	596	353
비율(%)	100.0	14.5	5.3	13.7	41.2	25.2

또한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수요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비를 지원¹¹⁾하여 자전거 주차시설 등을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2: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현황('26.1월 기준)

구분	계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이의 주차시설
지점(개소)	4,963	29	6	4,928
주차대수	126,077	5,210	130	120,737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1)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주차시설, 공기주입기 등) 시설비 지원사업 (2023~2024)

연도	지원자치구	주차시설	공기주입기	기타(계시판, cctv 등)	지원금액
2023	12개구	1,244대	51대	80개	978백만원
2024	12개구	602대	49대	20개	238백만원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이용시설 이용 노력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위치·규모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비지침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 또는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 및 교통 혼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위치, 규모 및 유지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동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및 이용편의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내용 일부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적인 이용 원칙을 명시하여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존 자전거도로 이용확대 등 효율적인 정책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다만,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자치구별 관리 현

황, 이용률 및 관리 수준 평가 등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자전거이용시설 이용 책무와 관련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운영중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 분석과 시설의 안전
성·연속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활
용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
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